

최 신 판 례 예 규

마케팅 Tax Consulting

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 외부에 서 부동산 임대용역 제공시 부가세 납세의무는 수 탁자에게 있음

수탁자가 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 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 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임

부가가치세제과-419. 2019.07.04

◆ 질 의

수탁자와 위탁자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

◆회 신

- 1. 「신탁법」에 따른 수탁자가 신탁부동산에 대한 유지、보존, 처분 및 수익금의 운용、관리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한편, 신탁부동산의 처분권은 지정된 수익자가 가지는 신탁에 있어서, 수탁자가 신탁에 따른 수탁자의 권한으로위탁자와 수탁부동산에 관한 임대차 계약을체결하고 임대료를 지급받는 경우 동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는 수탁자가 되는 것입니다.
- 2. 다만, 신탁 계약, 임대차 계약, 대출 거래 등이 사실상 하나의 거래로서 그 실질이 차입거 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탁자가 위탁자로부터 받는 임대료 명목의 금전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, 해당 거래가 부동산 임대용역의 제공인지 또는 자금차입거래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신탁계약과수익권의 구체적인 내용, 위탁자ㆍ수익자간관계 등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

내국법인이 보유하는 국외부동산을 양도 하는 경우에는 '법인세법, 제55조의2제1항 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 례를 적용하지 아니함

사전법령법인-54, 2019.06.05

♦질 의

- 갑법인은 '76.3.24. 설립되어 컨테이너선 및 유조 선 등을 이용한 해운업을 영위하는 상장법인으로
 - '15.10.23. 미국 소재 완전자회사로부터 캘리포 니아 산호세 지역의 나대지인 국외 부동산을 현물배당받은 후
 - '18.10.29.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미국법인에 양 도하였음

질의

- 내국법인이 완전자회사로부터 나대지 부동산을 현물배당받은 후 업무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 는 경우
 -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에 따른「토지 등 양도소 득에 대한 과세특례」가 적용되어 법인세가 추가 과세되는지 여부

♦회 신

내국법인이 국외 자회사로부터 국외부동산을 현물배당으로 취득한 후 양도하는 경우해당 국외 부동산은 「법인세법」제55조의2제1항에 따른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

정관상의 주요목적시업이 한국표준산업분 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 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함

서면법인-363, 2019.06.06

♦질 의

사실관계

- △△위원회(이하 "질의법인"이라 함)는 □□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 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단체임
 - (설립목적) 국제공정무역마을운동에 기반한 공 정무역마을목표를 한국에 적합한 수준으로 제 정하고, 공정무역 인식증진과 공정무역상품 판 매를 촉진하는 일련의 공정무역마을 운동을 지 위하며
 - 공정무역마을, 공정무역대학, 공정무역학교, 공 정무역종교기관, 공정무역실천기업 및 기관 달 성여부를 심사
 - (적합성 심사) 국제적으로 권고하고 있는 공정 무역마을 목표에 적합한 수준으로 공정무역을 실천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기업 또는 기 관, 자치단체 등의 신청이 있는 경우 심사를 수행하고
 - 일정기준에 의한 심사수수료를 받아 심사위원 의 수당지급과 공정무역마을운동 캠페인 및 홍 보비 등으로 사용

질의

○ 심사수수료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지 여부

◆ 회 신

귀 질의의 경우 아래 회신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법인세과-471, 2013.09.06

귀 법인의 정관상의 주요목적사업이 한국표준 산업분류에 의한 사업에 해당되고 수입이 발생 한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입니다. 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'소득세법제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·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·납부한 경우에는'국세기본법,제48조에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47조의4의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

서면법령기본-1283, 2019.06.11

♦질 의

○ 질의인(양도인)은 비상장주식을 총 매매대금을 00억원 가량으로 하여 201X.XX.XX. 주식양도계 약을 체결하였고 양수인은 계약금 0억원, 중도 금 00억원만 우선 지급하기로 하고 잔금 00억 원은 쟁점 설치공사가 계약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 지급하도록 계약하였음

질의

○ 주식양도와 관련하여 양도일 이후 매매계약 조건 성취로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양도소 득세 수정신고하는 경우 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 부

♦회 신

귀 질의의 경우, 기 질의회신(재산세과-1160, 2009.06.11)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○ 재산세과-1160, 2009.06.11

거주자가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고 「소득세법」제 110조에 따른 양도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· 납부를 한 후 매매계약 약정에 따라 확정신고 기한이 경과하여 추가로 수령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성실히 수정신고 · 납부한 경우에는 「국세기본법」제48조에 따라 같은 법 제47조의3 및 제 47조의4의 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며,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입니다.